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128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명칭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생략)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 ----- ----- <u>장애인가족지원</u> <u>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신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신설></u>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

현행	개정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u>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정을</u>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지정을</u> 받은 경우 2. <u>제4항에</u> 따른 <u>지정</u>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략) ④ <u>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u>제30조의2제3항에</u> 따른 <u>수행기관의 지정</u> 취소 2. ~ 5. (생략)	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u>위탁을</u>----- -----. 1. ----- -----<u>위탁을</u>----- 2. <u>제6항에</u>-----<u>위탁</u>----- ----- 3. (현행과 같음) ⑥ <u>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u>----- -----. 제83조의2(청문) ----- ----- ----- -----. 1. <u>제30조의2제5항에</u> 따른 <u>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u> 취소 2. ~ 5.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이에 따라 전국 115개소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운영 중에 있음.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15	26	1	1	2	1	2	1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5	7	7	3	4	13	21	2

주1): 2023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1)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최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²⁾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으며, 지방고유 사업으로 분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강원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3억 5,820만원을 지원받는데 비해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별로 1억 1,710만원을 지원받는 등 지역 간 지원액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 수익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관도 있음.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재정지원 현황 >

(단위: 원)

시·도	지방자치단체 지원 ¹⁾	기관 자체 부담 ²⁾
서울	117,100,000	3,900,000
부산	200,000,000	24,000,000
대구	285,000,000	-
인천	224,000,000	5,000,000
광주	270,000,000	10,000,000
대전	255,000,000	17,500,000
울산	124,000,000	-
세종	342,000,000	-
경기	271,400,000	18,300,000
강원	358,200,000	25,600,000
충북	241,100,000	2,700,000
충남	176,600,000	46,100,000
전북	178,000,000.	4,300,000
전남	211,300,000	3,200,000
경북	166,200,000	10,500,000
경남	120,300,000	4,200,000
제주	217,000,000	-

주1): 각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지원액

주2): 각 시·도 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평균 자체부담액

자료: 보건복지부

2) 2020년 98개소 → 2023년 115개소(보건복지부 제출)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명칭을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동 센터가 지역별 지원액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은 현재 법률상 명칭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지만 해당 기관들의 실제 운영상 명칭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점, 비용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될 경우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지원액 및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지정’ 방식이 개정안에 따라 ‘설치·운영, 위탁’ 방식으로 변경되어도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 후, 선정하는 제도 운영 방식에는 실질적인 차이 또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참고자료 1: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³⁾

□ 다만, 현행법 동 조항의 신설 당시에도 개정안과 같이 당초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발의되었으나,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타 기관

3)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민간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지정’이 사용될 수 있음. 즉, 그 법적 형식은 지정행위이나 그에 따라 형성되는 공법상 법률관계는 위탁으로 볼 수 있음.(이성열, (2015).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 지정과 본래적 의미의 지정의 구분: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전문기관 지정의 성격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전문기관 지정의 성격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41), 1-25.)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2212호)

들(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 의결되었으며,⁵⁾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포괄하는 기관이 부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고, 그 관계 설정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시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전반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본 법안 취지에 공감.
- 다만, 현재 지자체별로 다수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중복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규 센터의 설치·운영은 신중할 필요
 -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센터 수 확대가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일 것으로 판단
-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현재의 지정 방식에서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

5) 제347회 보건복지소위제2차(2016년 12월 27일) 회의록 참고

- ‘지정’ 또는 ‘위탁’ 방식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규정되며, 방식에 따른 재정적, 법적, 행정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반대)

- ‘현행 지정할 수 있다’에서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자체별로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함. 이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추가로 별도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 관점에서 비효율적임.

- 세종특별자치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자체에서 정책과 집행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반대)

- 현행 장애인가족지원사업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 가족중심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체 장애 유형으로 확대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의②항을 그대로 존치하되, 별도의 (가칭)「통합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4.>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6 관련)

1. 시설 기준

- 가. 사무실: 1개 이상
-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 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3명 이상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